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계약자(본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본교에 제출하고,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사양서), 설계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청구부서에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교가 제시한 건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거래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보증) 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본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본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물품대를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량조절) 본교는 필요에따라 계약된 물품의 량 또는 수를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교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및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2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제13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본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5조 (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7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수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본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본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이행의 감독) 본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① 본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본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마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문서의 해석) 이 일반조건, 기타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본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